

#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

### □ 대상사업

- 개인연구지원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최초 지원		후속 지원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자유공모	리더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8억원 내외	9년 (3+3+3)	3~8억원 내외	3년
	중견연구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 마련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0.5~3억원	1~5년	0.5~3억원	1~5년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0.5~1억원 (필요시 최초혁신 실험실 구축비 추가 지원*)	1~5년 (최초혁신 실험실 구축비는 1년)	0.5~1억원	1~5년
	생애 첫 연구	연구역량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0.3억원 이내	1~3년	-	-

\*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초기 정착기 연구자에게 최초혁신실험실 구축비 추가 지원 (1년차에 간접비 제외 0.5~1억원 지원)

○ 집단연구지원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 연구비	연구기간 (최대)
선도 연구 센터	이학분야 (SRC)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5.6억원 이내	7년 (4+3) (추가지원 3년)
	공학분야 (ERC)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20억원 내외	
	기초의과학 분야 (MRC)	의·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분야 연구 역량 강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4억원 이내	
	융합분야 (CRC)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20억원 이내	
기초연구실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 그룹의 형성을 지원하여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수 3~5인으로 구성	2억원 내외 ~5억원	3년 (후속 3년)

## 2. 2018년도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 신규과제는 2018년에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2018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 지원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여 접수·평가·선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신규과제(전체)		최초 지원		후속(추가)연구 지원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개인 연구	자유 공모	리더연구	13내외	7,537	12내외	6,731	1이내	806
		중견연구*	1,113내외	153,686	694내외	110,697	419이내	42,989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1,258내외 (500)	83,872 (15,000)	1,030내외 (500)	79,134 (15,000)	228이내 (-)	4,738 (-)
	개인 소계	2,384내외	245,095	1,736내외	196,562	648이내	48,533	
집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31내외	33,210	29내외	31,940	2이내	1,270	
	기초연구실**	29내외	10,821	29내외	10,821	-	-	
	집단 소계	60내외	44,031	58내외	42,761	2이내	1,270	
합 계			2,444내외	289,126	1,794내외	239,323	650이내	49,803

\* 전략연구 후속지원 포함, \*\* 국제공동연구 유형 포함(추후 별도 공모 예정)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 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 신청 · 선정 과제수

○ (신청)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 상반기 1차 총 3과제 신청가능(리더연구 1과제, 중견·신진연구 중 1과제, 집단연구 중 1과제)
- 상반기 2차 총 2과제 신청가능(이공학개인기초(한국형 SGER) 1과제,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 국내외 연수) 중 1과제)

※ 교육부 사업(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 중점연구소)은 2017.12월 별도 공고 자료 참고

- 상반기 3차 총 3과제 신청가능(이공학개인기초(기본·보호·지역대학) 중 1과제, 생애 첫 연구 1과제, 학문후속세대양성(리서치펠로우) 1과제)

※ 2016년 이후 선정된 개인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은 과제 수행 중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청이 제한됨.

- 하반기 1차 총 1과제 신청가능(중견연구(보호·육성분야 포함) 1과제)
- 하반기 2차 총 1과제 신청가능(생애 첫 연구 1과제)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

- 개인연구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
- 집단연구 :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리더연구 > 중견·신진·이공학개인기초 >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우선 선정함.**

#### 주의

- ▶ 리더연구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포함된 중견·신진연구·이공학개인기초·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는 탈락되며, 중견·신진연구·이공학개인기초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포함된 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는 탈락됨.
- ▶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 책임자로만 지원함.

**<기초연구사업 신청·선정 과제 수>**

사 업			신청 ※ ( )는 접수마감 시기					선정
			상반기			하반기		
			1차 (개인 2017.12월초 집단 2018.2월초)	2차 (2018.1월초)	3차 (2018.3월초)	1차 (2018.6월초)	2차 (2018.9월초)	
개인 연구	이공학 개인기초 (교육부)	기본, 보호, 지역대학	-	-	1개 과제 신청가능	-	-	1개 과제
		한국형 SGER	-	1개 과제 신청가능	-	-	-	
	신진연구		1개 과제 신청가능	-	-	-	-	
	중견연구		-	-	-	-	-	
	리더연구		1개 과제 신청가능	-	-	-	-	
	신진연구(생애 첫 연구)		-	-	1개 과제 신청가능	-	1개 과제 신청가능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부)	박사후 국내·외연수	-	1개 과제 신청가능	-	-	-	
		리서치펠로우	-	-	1개 과제 신청가능	-	-	
중견연구 (보호·육성분야 포함)		-	-	-	1개 과제 신청가능	-		
집단 연구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1개 과제 신청가능	-	-	-	1개 과제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제한

-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2015년까지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제외

- 집단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개인연구 : 리더연구, 중견연구(전략과제 포함),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

※ 집단연구 :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 포함), 대학중점연구소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 1인 1과제로 수행 제한

- 개인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X-프로젝트 제외)

\* 2015년까지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은 제외

- 집단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li> <li>▶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li> <li>▶ 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별 참여율 및 사업별 제한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안내문을 확인</li> </ul>

○ 정부R&D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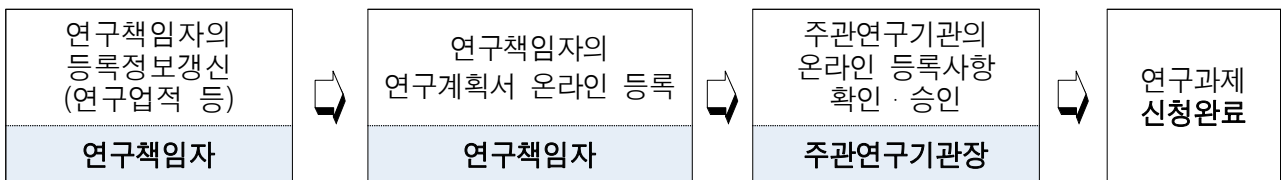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0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li> <li>▶ 20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li> </ul>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5. 평가방법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리더연구		토론	해외서면+발표+토론
중견·신진연구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온라인서면	-
	총 연구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토론	-
	총 연구비 5억원 초과	토론	발표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토론	발표
	기초연구실	토론	발표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6. 연구비 및 연구기간 평가 안내 (중견연구·신진연구)

○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을 검토 및 조정

〈 조정방법 〉

사업	구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방법
중견·신진연구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온라인 평가 → 패널심의
	총 연구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토론평가
	총 연구비 5억원 초과	발표평가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 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7. 신청기간

※ **유의사항 안내**

- 연구자 신청접수 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1차-개인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7.11.27.(월) 9:00 ~ 2017.12.6.(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2017.12.8.(금) 18:00

□ **[상반기 1차-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8.1.29.(월) 9:00 ~ 2018.2.7.(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2018.2.9.(금) 18:00

※ 상반기 2차(교육부 SGER, 박사후연수사업)는 12월 공고 및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상반기 3차]** 생애 첫 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8.2.21.(수) 09:00 ~ 2018.3.5.(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2018.3.7.(수) 18:00

※ 상반기 3차(교육부 기본/보호/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사업)는 12월 공고 및 신청기간 별도 안내

□ **[하반기 1차]** 중견연구(보호·육성분야 포함)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 2018.6월 초

□ **[하반기 2차]** 생애 첫 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 2018.9월 초



## 8. 추진일정(안)

일 정	추진내용
2017. 11월	· 2018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2017. 12월~ 2018. 2월	· 상반기 1차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2018. 3월	· 상반기 1차 개인연구(신진, 중견)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 상반기 3차 개인연구(생애첫연구) 신규과제 접수/선정평가/연구개시(예정)
2018. 5월	· 하반기 1차 개인연구(중견) 접수
2018. 6월	· 상반기 1차 개인연구(리더)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 상반기 1차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 하반기 1차 개인연구(중견) 선정평가(6~8월)
2018. 8월	· 하반기 2차 개인연구(생애첫연구) 신규과제 접수
2018. 9월	· 하반기 1차 개인연구(중견) 연구 개시(예정) · 하반기 2차 개인연구(생애첫연구) 선정평가 및 연구개시(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기타사항

###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 과제 수행 중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수수료 안내

-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트를 통한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수수료 필요

### □ 학생연구원 실지금액 하한선 안내

- 대상과제 : 2018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적용대상 : 당해년도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등
  - 개인연구(신진·중견연구 중 해당과제,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금액 기준으로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20만원 이상 보장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금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 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 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 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유래 DNA 등

## 10. 문의처

○ 사업신청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구 분	연 락 처
리더연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630)
중견연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823,6824)
신진연구	[신진연구/최초혁신실험실]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821) [생애 첫 연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622)
선도연구센터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826)
기초연구실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630)

○ 제도·정책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2-2110-2373, 2376)

붙임 : 2018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세부사업별)

<참고>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주요내용	적용 과제
<p>연구자 맞춤형 연구비 지원</p>	<p>○ 연구자가 연구분야·주제별 필요한 연구비/연구기간*을 신청·지원 * 연0.5/1/3억×3년 → 연0.5~3억×1~5년 - 매년 균등지원 → 연차별 차등 지원 ※ (예시) 1+1+1억 → 1.5억+0.6억+0.9억</p>	<p>신진/중견연구</p>
<p>장기·심화연구</p>	<p>○ 중복성 검토를 완화하여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하여 장기·심화연구 장려</p>	<p>기초연구사업</p>
<p>연구과제 변경 허용</p>	<p>○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과제변경 희망 시 타당성 평가를 거쳐 허용 ※ 연구비 총액 변경 없이 연구기간(예: 3 → 4년) 및 연구내용 변경(A → A') 허용</p>	<p>신진/중견연구</p>
<p>공동연구 지원 확대</p>	<p>○ 연구내용에 따라 필요 시 개인연구에서 2인 공동연구 허용 ○ 신진·중견연구 계속과제 대상 국제 공동연구 기관 확대 ※ EU-ERC 및 전 세계 연구팀 단기 방문연구지원</p>	<p>신진/중견/리더연구</p>
<p>장기·안정적 연구지원</p>	<p>○ 신진·중견연구 연구기간 확대(3년→5년) 및 후속연구 확대* * 신청과제 15~20% → 신청과제 30% 이내 - 중견연구 후속 지원 횟수 제한 폐지(후속연구 기수행자도 신청 가능) ○ 리더연구 과제 종료 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허용 및 추가지원 신설(3년, 신청과제의 20% 이내) ○ '11년 이후 선정된 S/ERC 대상 후속 연구 지원 ※ 종료과제 중 우수과제(20%이내) 추가 3년 지원</p>	<p>신진/중견/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p>

구 분	주요내용	적용 과제
<p>신진연구자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혁신 실험실’(0.5~1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연구 선정 연구자 대상 연구시설·장비구축 등 지원</li> </ul> </li> <li>○ ‘생애 첫 연구’(0.3억원 이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대상 연구비 지원</li> </ul> </li> </ul>	<p>신진연구</p>
<p>연구서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서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구 연구계획서: 중복양식·불필요한 항목 삭제로 서식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 20 → 5쪽 / 중견: 30 → 10쪽</li> </ul> </li> <li>- 개인연구 연차·중간·최종보고서: 과정 중심으로 연구 수행 실적 작성</li> <li>- 집단연구 연구계획서: 분량제한 강화, 집단연구 수행 필요성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연구센터: 70 → 35쪽 / 기초연구실: 25 → 15쪽</li> </ul> </li> </ul> </li> </ul>	<p>신진/중견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p>
<p>평가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과제 중심 온라인 평가 확대</li> <li>○ 신진·중견연구 연차점검 폐지</li> <li>○ 신진연구 및 총연구비 3억원 이하 중견연구 최종평가 제외</li> </ul>	<p>신진/중견연구</p>
<p>과정존중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종료평가 시 ‘성공/실패’에서 ‘성실/불성실’ 여부 판단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과제에 한하여 성과수준 판단</li> </ul> </li> <li>○ 리더연구 단계평가 시 「하위 10% 과제 강제 지원중단」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불성실과제는 지원 중단 가능</li> </ul> </li> </ul>	<p>기초연구사업</p>

구 분	주요내용	적용 과제
비정규직 연구책임자 및 임신·육아휴직자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중단 사유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기관 비정규직 채용 후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li> </ul> </li> <li>○ 임신·육아휴직 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 허용</li> </ul>	기초연구사업